

#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4일

발 의 자: 유만희, 경기문, 김경훈,  
김규남, 김동욱, 김용일,  
김원중, 김지향, 김춘곤,  
김태수, 도문열, 문성호,  
박영한, 박환희, 서준오,  
신동원, 유정인, 윤영희,  
이종태, 최민규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및 기초연금수급자에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음.  
(22. 8월 현재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받는 서울시 거주자 3,773명)
- 반면,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의 가구에만 독립유공생활지원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, 국가보훈처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.
- 서울시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 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”을 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 및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”로 함  
(안 제3조제1항제5호나목)

### 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나목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 및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<u>사람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람</u> 및 「<u>기초연금법</u>」에 따른 <u>기초연금수급자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2101200000018

## 비용추계서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선동규 분석관

접수일 : 2022.10.12.

회신일 : 2022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###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조도형

추계세계팀장      이정수

분석관(주무관)    선동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abasiclilfe@seoul.go.kr

---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안 제3조(지원사업)제1항제5호나목중 생활지원수당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에서 ‘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’를 추가하는 규정에 따라 늘어난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가 비용

### 2. 세부추계내역

가. 생활지원수당 증액분 ≙ 10,800,000천원

- 산출방식 =  $\sum_{i=1}^5$  (생활지원수당증액분)<sub>i</sub>

*i* = 비용추계 연차(2023년~2027년)

- 연간 생활지원수당 증액분 ≙ 2,160,000천원  
 = (추가 지원대상자수 : 기초연금수급자) × (월 생활지원수당) × (12개월)  
 = 900명 × 200천원 × 12개월  
 = 2,160,000천원

※③2023년 추가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산출 900명 = ①-②

- ① 2023년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예상 대상자수 3,800명  
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+기준중위소득70%+기초연금수급자)
- ② 2022년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자수 2,900  
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+기준중위소득70%)

※※ 2022년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수(10월분까지) 및 산출근거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산출근거
①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	3,629	3,680	3,698	3,738	3,759	3,760	3,760	3,773	3,786	3,790	3,800
② 서울시 생활지원수당	2,900	2,900	2,900	2,900	2,900	2,900	2,900	2,900	2,900	2,900	2,900
③예상 기초연금수급자	729	780	798	838	859	860	860	873	886	890	900

▶ 자료출처 :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자료 참조

※2022년 예상 기초연금수급자수가 매월 줄어들지는 않고 약간 증가하고 있어 2023년 900명 반영